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제17-17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21.10.29.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1. 일 시 : 2021년 11월 8일(월) 오후 3시 30분

2. 장 소 : 학교법인 회의실

3. 참석이사

구 분	인원	성 명
이사	참석	8명
	불참	
감사	참석	1명
	불참	1명
		고성주, 고순애, 김남기, 양해경, 우창록, 원선희, 정 선, 최이규 주정철 박철훈

4. 이사회 성립 선언

고성주 이사장이 제17-17차 이사회가 2021년 11월 8일(월) 오후 3시 30분 학교법인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8명 전원참석, 감사 1명이 참석하여 당 법인 정관에 의거, 적법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5. 안건채택

고성주 이사장이 아래의 순서로 안건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다.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채택하다.

제1안건 서울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 3차 추가경정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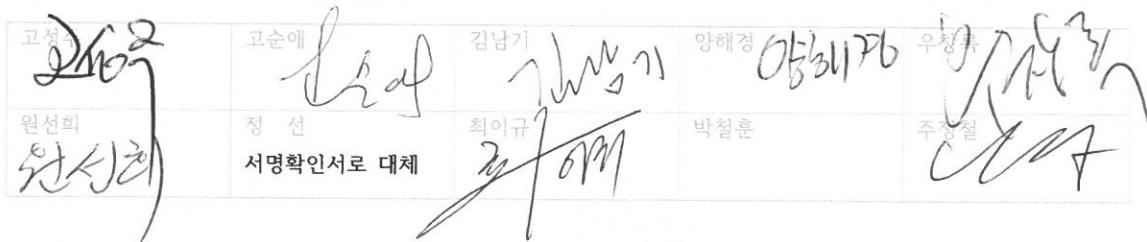
제2안건 케이씨대학교 2021학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제3안건 등촌중학교 2021학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제4안건 케이씨대학교 2021-2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정년트랙 전환임용 건

제5안건 학교법인 정관(케이씨대학교 교명 변경 외) 개정 건

보고사항: 1. 법인 소송현황 보고



6. 안건심의

제1안건 서울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조현정 센터장이 당초 세입·세출액 2,368,951,000원에서 13,049,000원을 증액한 2,382,000,000원으로 2021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다.

이에 이사들의 의견교환과 토의 끝에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차 추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최이규 이사가 동의, 김남기 이사가 재청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2안건 케이씨대학교 2021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신민규(기획처 기획예산팀) 기획예산담당이 2021학년도 기정예산 18,169,878,332원에서 361,655,834원이 감액된 17,808,222,498원으로 편성한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다.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우창록 이사가 동의, 양해경 이사가 재청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3안건 등촌중학교 2021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등촌중학교 이기태 행정실장이 2021학년도 제1차 등촌중학교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예산대비 세입·세출 각 935,433,000원 증액된 4,081,907,000원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다.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원선희 이사가 동의, 김남기 이사가 재청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4안건 케이씨대학교 2021-2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정년트랙 전환임용 건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정년트랙 전환 임용

이오갑 교무처장이 2021학년도 2학기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정년트랙 전환임용 경과를 보고하다.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최이규 이사가 동의, 양해경 이사가 재청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①사회복지학과 노혜진 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임기 2021.12.01. ~ 2025.11.30. 4년)로 전환임용하는 안

②사회복지학과 은선경 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임기 2021.12.01. ~ 2025.11.30. 4년)로 전환임용하는 안

③식품영양학과 윤진아 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임기 2021.12.01. ~ 2025.11.30. 4년)로 전환임용하는 안

우창록	원선희	최이규

④ 음악콘텐츠학과 최성락 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임기 2021.12.01. ~ 2025.11.30. 4년)로 전환임용하는 안

⑤ 교양교육원 백미현 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임기 2021.12.01. ~ 2025.11.30. 4년)로 전환임용하는 안

제5안건 학교법인 정관(케이씨대학교 교명 변경 외) 개정 건

◇ 등촌중학교 인사위원회 관련 정관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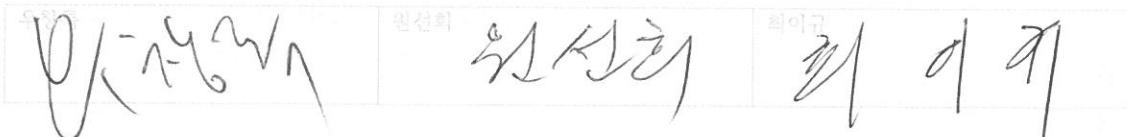
등촌중학교 이기태 행정실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침에 따라 중학교 관련 인사위원회조항들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월안대로 승인할 것을 원선희 이사가 동의, 최이규 이사가 재청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정관 개정 신구대조표

기관명 : 등촌중학교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명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없음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면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육기관의 경사, 겸임·초빙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중학교의 경우 교원의 보직과 연수 및 포상대상자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른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면에 관한 사항 중학교의 경우 교원(학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대학교육기관의 경사, 겸임·초빙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중학교의 경우 교원 보직과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 업무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신규교원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른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중학교 교원 임용 등 중요 사항 중학교는 교감,교사 자격연수 및 포상대상자추천, 업무분장사항 신규교원임용 골개전형 변경없음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5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중학교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교원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5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중학교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교원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중학교는 7명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③인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중학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 분야별 변경없음



현 행	개 정 (안)	비 고
(4)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학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문안변경 신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중학교의 경우 위원 1/3이상 요청 할 때)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학교는 1/3이상 요청 할 때 동안변경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중학교의 경우 제1항의 회의록에는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중학교는 위원 전면 서명 동안변경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중학교의 경우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중학교는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 동안변경
제58조(운영세칙) 인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중학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 인사위원회 세부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세칙) 인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중학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 인사위원회 세부 규정에 따른다.	중학교는 정관에 없는 사항 인사 위원회 세부 규정으로 정함

◇케이씨대학교 교명 개명 정관변경

케이씨대학교 김용재 총장이 교명 개명 경과를 보고하다. 고성주 이사장이 개명에 대한 토의를 제안하다.

우창록 이사: 온전히 대학에 초점을 맞추어 개명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 선 이사: 교단의 분열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TFT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보다 개명진 행과정의 내용이 중요하다. 학교를 가장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개명을 찬성한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자매대학도 지명, 인명으로 교명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동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TFT를 다르게 구성한다고 해도 내용상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명이 바뀌어도 좀 더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해경 이사: 개명에 찬성합니다. 개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지만, KCU 해외동문회 등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순애 이사: 개명에는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차기 이사회로 의결을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원선희 이사: 개명에 찬성합니다. 개명을 학교의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개명과정에서 소외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한두 차례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최이규 이사: 개명의 시급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중요하며, 개인적으로 교단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남기 이사: 개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다. 소외된 그룹의 의견을 한 번 청취할 필요가 있다.

주정철 감사: 대학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KC대학교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 학교법인의 의결권은 당연히 이사회에 있다.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성주 이사장: 이사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모든 이사들이 개명에 찬성하고 있다. 개명논의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외된 그룹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우창록 이사: 개명의 논의를 11월 30일(화) 차기 이사회에서 개명을 의결하도록 하자. TFT를 새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소외된 그룹의 의견을 고성주 이사장과 최이규 이사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동대는 가장 기독교적 정체성이 강한 대학이며,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김남기 이사: 11월 말까지 차기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법인이사도 각각 의견을 수렴하자.

원선희 이사: 12월 1일(수)~3일(금) 사이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고성주 이사장: 12월 3일(금) 오전 11시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고순애 이사: KCEF는 ZOOM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고성주 이사장: 추가 간담회는 11월 26일(금) 오전 11시에 실시하기로 하자. 전원 동의하여 11월 26일(금) 오전 11시에 실시하기로 하다.

보고사항: 1. 법인 소송현황 보고

김강 법인사무처장이 학교법인 소송현황을 보고하다.

우창록	최이규	원선희

전원 동의하여 12월 3일(금) 오전 11시에 차기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교명 개명 정관개정을 다루기로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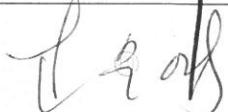
간지서명은 우창록, 원선희, 최이규 이사가 하기로 하고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폐회하다.

2021. 11. 8.

이에 서명 날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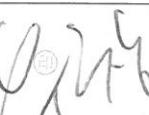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이사장 고 성 주 

이사 고 순애 

이사 김 남 기 

이사 양 해 경 

이사 우 창 록 

이사 원 선 희 

이사 정 선 서명확인서로 대체

이사 최 이 규 

감사 박 철 훈 

감사 주 정 철 